

 국토교통부	보도설명자료		
	배포일시	2020. 1. 13(월) / 총 2매(본문 2매)	
담당 부서	자동차운영보험과	담당자	• 과장 이중기, 사무관 노경우 • ☎ (044) 201-3855, 3858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정부는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를 위해 무자격검사 지정취소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< 보도내용(MBN, '20.1.12) >

- ◆ 판치는 자동차 허위검사 ... 3곳 중 1곳 '불량'
- 지난해 9개월간 780여 개 검사장을 점검했더니 212곳이 불법검사 적발
 - 불법검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단속의 실효성 제고 필요

- 정부는 민간검사소 불법·부실검사 방지대책('18.11.21)에 따라 '18년부터 매년 두차례 합동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, '19년 3월부터는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모든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*을 통하여 부실검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.

*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 3명이 전담하여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(VIMS)의 자동차 검사 결과 및 검사사진 등을 상시모니터링하여 불법·부실검사 의심업체 적발

- 아울러, '20년 3월 10일부터는 불법명의대여·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 1회 적발 시 지정취소하고,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정지기간을 확대(10일→30일 등) 하는 등 행정처분이 보다 강화('19.12.9 시행규칙 개정)될 예정입니다.

- 보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783개 민간 자동차검사장에 대하여 상시모니터링한 결과 212곳을 적발하였으나,

- 이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재확인하도록 하는 것으로써,

- 실제로 지자체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결과, 카메라 성능저하로 인하여 검사사진 촬영상태가 불량한 경우 등 불법검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실제 행정처분 업체수는 212곳보다 훨씬 적은(50%미만)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.
- 한편, 검사업체 대표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부당지시를 하지 않도록 일일 자동차검사 대수를 제한하고, 불법검사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아 지정취소된 사업자의 재지정 금지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,
 - 금년부터는 검사업체에 대한 검사역량평가*를 실시하고, 상시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검사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하는 등 민간검사소의 검사역량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.
- * 고의로 검사부적합사항을 만든 자동차를 공지하지 않고 검사를 신청하여 검사원의 부적합사항 발견률로 검사능력을 확인하는 평가방법
- 앞으로도 정부는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, 검사업체가 내실있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더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보험과 노경우 사무관(☎ 044-201-385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